

2021년 전남대학교여성연구소×광주여성민우회 공동포럼

부정된 돌봄

: 돌봄노동과 관계에 대하여

2021.10. 21.(목) 14:00-16:30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 ZOOM)

주최·주관 전남대여성연구소 * 광주여성민우회

2021 광주여성민우회X전남대여성연구소 공동포럼

["부정된" 돌봄 : 돌봄노동과 관계에 대하여]



개회		
13:50~	등록	증 접수 확인
14:00~14:05	사회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최희연
	축사	전남대여성연구소 소장 최은정
발표		좌장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14:05~14:20	발표1(15')	·주제 -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여성들의 일상을 통해 본 돌봄 불평등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최민서
14:20~14:35	발표2(15')	·주제 - 거리두기의 시대,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노동 ·전남대 여성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지영
14:35~14:50	발표3(15')	·주제 - '가족밖의 가족' 이 던지는 질문, 돌봄의 위계와 폭력 : 탈가정 청소년 '팜'을 중심으로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추주희
토론		좌장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14:50~15:00	발표1(10')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보명
15:00~15:10	발표2(10')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류형림
15:10~15:20	발표3(10')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위원장), 광주여성회 보육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양지
15:20~15:30	질의응답	
폐회		

2021.10.21.오후2시.ZOOM



광주여성민우회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1년 전남대학교여성연구소×광주여성민우회 공동포럼 일정

14:00~14:05	개회선언 최희연(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축사 및 인사 최은정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사회 최희연(광주여성민우회, 대표)
발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일상을 통해 본 돌봄불평등 발표 최민서(광주여성민우회)
14:05~14:50 (각 15분)	거리두기의 시대,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노동 발표 김지영 (전남대여성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가족 밖의 가족'이 던지는 질문, 돌봄의 위계와 폭력 발표 추주희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토론	토론 김보명(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4:50~15:20 (각 10분)	토론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토론 김양지(광주여성-엄마당 위원장, 광주여성회보육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5:20~15:30	질의응답
	폐회

목 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 : 여성들의 일상을 통해 본 돌봄 불평등 발표 ■ 최민서(광주여성민우회)	1
--	---

거리두기의 시대,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노동 발표 ■ 김지영 (전남대여성연구소, 학술연구교수)	27
--	----

‘가족 밖의 가족’이 던지는 질문, 돌봄의 위계와 폭력 발표 ■ 추주희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34
---	----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 : 여성들의 일상을 통해 본 돌봄 불평등1)

최민서 (광주여성민우회 모두의 평등팀 활동가)

1. 들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글로벌 팬데믹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로 이어졌다. 누가 이 사회에서 취약한 존재-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인지 감염병 재난을 통해 여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에 많은 틈새 또한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돌봄시설까지 사회의 기본적인 필수시설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걸어 잠그면서, 우리 사회는 돌봄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비상 상황이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견고한 돌봄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돌봄과 돌봄 노동의 낮은 평가는 오랜 역사가 있다. 돌봄은 대체로 여성, 여성적 또는 ‘비생산적’이라고 여겨지는 돌보는 직업과 연관되어 오랫동안 평가절하되어 왔다. 그래서 돌봄 노동은 변화 없이 저임금·무임금과 낮은 사회적 지위에 묶여 있었다.

돌봄은 정말 비생산적일까. 가치 없는 노동일까. 취약한 대상에게만 돌봄이 필요할까. 아프지 않는 삶이, 늙지 않는 삶이, 의존 없는 독립된 삶이 가능할까.

이에 광주여성민우회에서는 우리 사회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비가시화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돌봄의 불평등한 구조를 가시화하며 돌봄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독박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와 워킹맘들, 가족을 간병하는 여성들, 요양보

1) 본 발제문은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김효경, 정지윤, 최민서가 함께 기획·진행한 집담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호사들을 만나 집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 ‘펜데믹 속의 독박육아 집담회’를 통해 본 돌봄

○ 참여자 정보

	돌봄 대상	고용형태/직종	기타
참여자 1	8세, 11세 아동	정규직/공공기관	
참여자 2	6세, 12세 아동	전업주부	시간제 노동자
참여자 3	11세 아동	프리랜서/학교외부강사	자원봉사

1) 가정 내 돌봄노동의 불평등한 분배

끼니와 끼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다 : “보이지 않는 수 천, 수 만 가지의 노동들”

식사와 간식 등 메뉴 고민에,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여 끼니를 만드는 일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지 생일 등 집안 대소사 일정을 관리하는 일, 아이들의 학원이나 과 외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결정 등등 하나하나 목록화하기 힘든 노동의 집합이 집안의 노동이다.

(참여자 2) “애들이 없는 동안은 자유시간이라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사실 집에서 놀고만 있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필요한 준비물, 집에 뭔가 떨어진 건 없는지 살펴야 하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선 장도 봐야 하고요.”

(참여자 1) “문제는 이런 종류의 집안일이 수 천, 수 만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챙겨 하는 일들이. 결국 다 노동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책임까지 나눠지진 않잖아요”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맞벌이 부부 비율이 공식 통계로 잡히는 것만 46%이고,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이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여성이 3.5배가량 더 일한다.²⁾

참여자는 맞벌이 부부이지만, 남편은 눈에 보이는 가사노동 몇 가지와 아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아내 역할을 대리 수행하는 것으로 돌봄 분담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흔히 가사노동이라고 하면 요리, 빨래, 청소 등 몸으로 하는 노동을 떠올리지만, 코로나 상황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지친 아이들을 달래거나 직장일로 스트레스 받는 남편을 살피고 달래는 등의 가족의 감정적 건강을 돌보는 노동도 함께 포함했다.

(참여자1) “저희 집은 (둘 다 직장을 다니지만) 제가 70~80%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빨래, 청소, 주말 외출할 때 운전 정도? 그리고 제가 야근할 때 아이들 케어하고요. 그나마 많아진 거예요. 남편이 아직 전에는 3교대 근무하는 공장에 다녔고 주말에 토요일 오전에도 출근했기 때문에 제가 100% 담당했으니까요. 첫째가 6살, 둘째가 3살까지 그랬어요. 결국 남편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못 견디겠어... 남편도 남편인데.. 나도 못 견디겠으니까... 직장다니면서 육아와 집안일까지 못 견디겠어서... 친정과 시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부부의 성역할 가치관이 돌봄 노동 분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돌보거나 집밥을 하는 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했다. 실제 사회과학연구원이 펴낸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가 비전통적인 성 역할 가치관을 지닐수록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은 짧아지는 반면 남편은 길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자1) “시댁 아버님의 같은 경우 집안 환경이 밖에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집안 살림이나 육아 등) 모든 것에 면죄부를 갖는 분이세요. 남편이 보기에 본인 아버지보다 훌륭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잘하잖아’ 그래서 본인 역할에 만족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또래 남자보다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3) “왜 남자들이 생각하는 평균 하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평균이 다르죠?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그 평균을 위해 남편은 노력하지 않고 여성들만 죽어라 하고 노력하는데.

한국 사회는 가정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부부의) 협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자의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남편이 지적하면 내가 내 일을 잘 못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무능

2)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주중 1일 평균 가사와 육아 시간이 여성은 181.7분인데 반해 남성은 32.2분으로 집계된다.

한 사람인 것 같아져요. 남편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 일을 하면서 항상 저를 도와준다고 하고요. 서로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바빠서 못 했네” 하고 치울 텐데 그게 아니라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한 돌봄노동의 분배에서 앞에서 언급한 정서적인 감정 노동 외에 주 양육자로서 마음의 부담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돌봄이 공동 부담이라고 말은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 상담을 하거나, 알림장을 살피고 준비물을 챙기거나 내일 아이가 먹을 식사 준비를 한다거나 급하게 아이가 아파서 학교로 데리러 가야 하는 등 상황에서 주 양육자 역할은 주로 여성이 도맡아 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남편이 직장에서 학교까지 5분 거리임에도 40분 이상 걸리는 참여자가 급한 일에 호출되어 가는 것이 열 번 중 여덟 번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3) ”눈으로 드러나는 (일의) 분배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책임문제도 있어요.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선 여자만 100% 마음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된다면 내가 50, 60, 70%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둘 다 상황이 안될 때 “(남편이)나는 책임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참여자 1) ”저희는 둘 다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서 갑자기 애가 다쳤거나 열이 나서 연락이 왔을 때 일단은 제가 무조건 1번인 거예요. 조퇴를 한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 회사가 아이들과 더 가깝지만 열 번에 여덟 번 정도는 제가 가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이 학교까지 이동 거리가 남편은 5분이고, 저는 40분 거리임에도...“

(참여자 3) ”(단전에서 끊어오르는 외침) 아 뭐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책임을 좀 느껴야죠!!“

“살림은 집에 있는 사람의 온전한 몫”이라는 말에 대해 :

전업주부 무임금노동은 언제까지 가족을 위한 엄마의 희생이어야 할까. 쉬는 날도 없이 매일같이 하는 반복적인 일에 정년퇴직도 없는, 그러나 돈은 받지 않는 노동이 바로 전업주부의 무임금노동이다. 살림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집에 있는

사람이 전담해야 한다는 말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집에 있는 사람) = 여성’, ‘살림=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과 더불어 가정 내의 돌봄과 가사노동의 강도를 낮게 평가하고 노동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내지는 돌봄의 가치란 ‘없다’라는 인식의 반영이다. 돌봄의 가치 즉, 돌보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시간 지출, 임금이나 평생 소득의 상실, 돌봄노동을 하느라 포기해야만 했던 다른 중요하고 유의미한 여가나 수면 활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자 2) “저는 입을 보낼 게 없어요. 저는 워킹맘의 딱 반만 한 거잖아요. 나는 너무 작아져요”

(참여자 1)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육아는 당연히 공동 책임이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만 직장을 다닌다면 살림은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임무다. 정확히 분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은 직장이고 집은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 아닌가요? (살림도 공동책임이지 않나?)“

(참여자 2) “저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자라 온 환경 탓인지(...)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것이 당연히 내 업무이지. 부당하거나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우회에서 돌봄 강연도 듣고) 얘기를 듣고 나니 부당하네? 이런 생각이...“

(참여자 1) “일터에 24시간 머무는 거잖아요. 연차, 월차, 성과급 이런 것도 없고...”

2) 코로나 이후, 더해진 돌봄 노동

2020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한 유자녀 기혼 여성 대상으로 한 ‘COVID-19 와 한국의 아동 돌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워킹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녀를 돌보던 것에서 6시간 47분으로 자녀 돌봄 시간이 크게 늘었다. 전 업주부의 자녀 돌봄 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38분으로 증가했다. 반면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하기는 했으나 맞벌이 남성은 3시간에서 3시간 54분, 홑벌이 남성은 3시간 30분으로 30분 정도 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웠던 “엄마, 배고파”, 재택근무하는 남편의 삼시세끼까지 노동까지.

(참여자 2) “남편의 직장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하던 중 코로나 상황이 됐어요. 태국에서부터 이어진 1년 반 정도 집안에서만 있었는데.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나 죽을 것 같애”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아이가 둘인데) 큰애도 작은애도 내 손이 계속 필요 한 거예요. (...) 거의 집안에서 만보(만 걸음)이 가능했어요.

저의 가장 큰 업무는 삼시세끼였어요.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끼니 챙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재택하는 남편, 큰아이와 아직 어려서 작은 아이의 반찬을 따로 만들어야 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큰아이의 “엄마, 배고파” 소리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지, 배고파 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요. 세 끼니 사이에 간식까지...”

코로나 이후 늘어난 돌봄 노동: 주7일 주당 77시간 일하는 초등 워킹맘의 과로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출근하고, 돌봄 노동 끝나면 다시 야근으로”

(참여자 1) “재택근무를 해도 일하다 중간에 나와서 애들 챙겨주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하면서도 계속 저를 찾으니까요. 일하다가 세탁기 돌리고 일하다가 저녁 준비하고 일하고, 재택 할 때 하나의 위안은 다음 날의 애들 도시락 안 싸도 된다 정도였어요. 재택이 아니라면 저녁 먹고 치우고 다시 다음 날 애들이 먹을 점심 준비를 위해 도시락을 싸야 했어요.

직장에서 근무시간은 통상 9-6니까 9시간 계산하고요~ 사무실에서 야근은 통상 주 1회 네 시간 정도인 것 같고, 평소에는 집에서 밤에 집안일 다 끝내고 10시나 11시부터 한 두 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셈인데 바쁜 시즌에는 이게 일주일에 이틀 정도.. 가정에서 돌봄 노동은 퇴근 후 7시부터 10시까지니까 3시간.. 주말에는 10시부터 10시까지 거의 12시간 아닐까 싶네요.”

워킹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돌봄 업무와 혼재되어 노동의 강도는 더 세졌고, 학교가 폐쇄 및 대면 수업을 금지하면서 급식 대신 다음 날 먹을 점심 준비, 온라인 수업으로 구멍이 난 학습의 공백까지 여성이 도맡게 되면서 돌봄 노동의 더욱 가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노동까지 가해졌다.

참여자의 경우 주당 70~80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주당 54시간 이상 노동을 과로라고 하면, 워킹맘은 극심한 과로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코로나로 학교 폐쇄. 돌봄의 틈새를 엄마들의 연대로

2020년 코로나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학교가 폐쇄되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긴급돌봄을 시행하였지만, 초등학교는 한 학급으로 운영되

고 있던 긴급돌봄교실마저 운영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8세~11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코로나 긴급돌봄 체계에서 제외되는 돌봄 공백의 대상이었다. 주변에 수소문하여 같은 상황에 부딪친 워킹맘끼리 연대하여 자녀들을 돌보며 겨우 비상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다.

(참여자 1) “정말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었어요. 큰아이가 작년에 3학년이었는데, 초반에는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다가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학교가 싹 폐쇄가 되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계속되니까. 3학년짜리 아이가 혼자 학습도 학습이지만, 온종일 밥 챙겨 먹고 방치되는 게(...) 옆에 수소문했어요. 우리 집 같은 아이가 또 있을 것 같았어요. 맞벌이하는 집에 외동아이였고 일주일씩 교대로 한 주는 친구 집에, 한 주는 우리 집에서 도시락 싸 놓으면 먹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했어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발표한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여성이 자발적으로 퇴사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대(39~44살 집단) 여성의 노동 공급이 가장 심하게 감소한 것은 영유아 중심의 현행 돌봄 지원정책이 초등학생 자녀도 포괄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 이후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졌다.

(참여자 1) “가정안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주부들이 정신적으로 쉴 공간이 없어요.”

(참여자 3) “코로나 때 내 시간 없었던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눈 떠서부터 아이가 잠이 들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하니까.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잠들어야 내 시간이 확보되니까. 아이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자꾸 늦게 자는 것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덜 움직여서. 11~12시에 아이가 잠이 들면 그때부터 내 시간을 한 두시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더 늦게 자기도 하고. 시간이 아까워서요. 드라마 한 편을 마음대로 못 보고. 이게 뭐라고.

(참여자 2)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시간이 없어졌죠.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딱 일주일 동안 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아무도 나를 안 부르고, 화장실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있고, 진짜 일주일만 혼자 집에 있고 싶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일부라도 자녀 돌봄이나 가사노동 일부를 분담하기도 하

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서 코로나 상황은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코로나 상황은 시설의 돌봄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자녀 돌봄과 집밥 노동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정신적인 부담 혹은 스트레스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전업주부는 돌봄의 절대적인 주체로서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무급 자녀 돌봄과 집밥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돌봄의 부담을 인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3.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의 24시 집담회’를 통해 본 돌봄

○ 참여자 정보

	돌봄 대상	고용시설/직종	기타
참여자 1	치매 노인	시설 요양보호사	
참여자 2	치매 노인	방문요양보호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어렵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1) 24시간 시간표에 드러나는 시설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 현실

요양보호사의 하루는 아침 5시 기상해서 어르신들의 얼굴과 손, 발을 닦아드릴 따뜻한 수건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어르신들을 닦아드리고 7시 40분에 아침을 배식한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7~8명의 식사 시중을 들고, 한 방에 3~4명씩 계시니 두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야했다. 가족들이 따로 챙겨주신 반찬이나 국이 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어 음식이 상하진 않았는지 살피고 식당에 내려가서 따뜻하게 데워 캐리어 끌며 나눠드려야 했다. 식사를 하신 분은 복약지도와 양치를 하며 퇴식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하루 세 끼니를 챙겨 드린다. 끼니 사이에 두 번의 간식타임이 있다. 어르신마다 물의 온도도 달라서 어떤분은 따뜻하게, 어떤 분은 미지근하게

각각 맞춰드리고 개별간식이 있으면 따로 챙겨드린다. 당뇨, 폐렴 등 지병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각각 종류도 다르게, 드시는 것도 주의해서 신경써야했다.

기저귀는 오전10시, 오후3시, 저녁8시, 밤11시 하루 네 번 교체해드렸다.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노인 제외). 기저귀를 교체할 때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영양보호사가 본인 허리를 사용해 노인의 몸을 굴려 움직이게 해야했다.

그리고 야간에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도 해야한다. 하루 두 번 인수인계와 라운딩, 오전엔 각 방과 화장실 청소, 컵 씻기 등을 해야했고, 주 1회 목요일에는 26명을 목욕시키고 세탁물을 하루종일 빨로 넣고 걸어서 개는 업무와 패드와 베드를 갈아야 했다. 이것이 전부 아니다.

요양보호사의 24시	
5:00 ~ 6:30	기상 / 물수건준비 / 얼굴 및 손발닦아드리기
6:30 ~ 8:30	아침배식 및 식사 / 퇴식, 양치 / 복약
8:30 ~ 9:00	주야간인수인계 및 라운딩
9:00 ~ 9:30	각 방&화장실 청소
9:30 ~ 11:30	간식 / 기저귀케어
11:30 ~ 14:00	점심배식 및 식사 / 퇴식, 양치 / 복약 / 오전일지기록
(9:00 ~ 14:00)	주 1회 - 목욕 / 이미용 / 세탁, 건조)
14:00 ~ 15:00	인지프로그램
15:00 ~ 16:00	간식 / 기저귀케어
16:00 ~ 16:40	정서케어
16:40 ~ 17:30	저녁배식 및 식사 / 퇴식, 양치 / 복약
17:30 ~ 18:00	주야간인수인계 및 라운딩
20:00 ~ 22:00	컵 씻고 물보충 / 기저귀케어
22:00 ~ 23:00	소등 / 정서케어
23:00 ~ 5:00	기저귀케어 / 체위변경 / 교대휴식

(참여자 1) “어르신들이 혼자 떠서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먹여드리거나 경관식, 즉 말하면 코로 콧줄을 꺼가지고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한 명당 거기에 메여가지고 그분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주간에는 한 명이 7~8분을 (케어)해야 돼요. 그러면 이방저방 뛰어다니면서 이 어르신을 흘리고 있으면 가서 닦으고 또 이 어르신 수저질 하다가 떨어지면 또 바꿔드리고. 누가 벨을 누르면 후다닥 뛰어가서 물 갖다 드리고 뜨거운 물 주라하며 뜨

거운 물 갖다 주고 차가운 물 주라도하고,

그 어르신들 다 식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잔반 처리해서 식당까지 다 갖다 드리고. 또 갖고 오고. 이것까지가 이제 저희가 할 일이에요.”

(참여자 1)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은 목욕을 하는 날인데 어르신들 스물여섯분을 목욕을 시키다 보면 옷이 이렇게 쌓일 거잖아요. 그게 쌓이면 세탁기가 몇 번을 돌아서. 욕상 가서 넣고 건조기가 또 없는 시설은 욕상 가서 넣고 마르게 되면 또 갖고 와서 개고 그 경우를 하루 종일(...) 목욕하는 날에는 그게 비상이에요. 또 이 날은 어르신들 손·발톱 그리고 또 혹시 이 미용 서비스, 이발이나 그런 경우도 할 경우 있고.”

(참여자 1) “또 간식도 개별로 온 간식 챙겨주는데, 26명 어르신한테 간식 먹이는 또 다르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당뇨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 과일 사오면 씻어서 드려야 되고. 간식 창고가 있으면 거기서 이름 다 써가지고. 이 어르신 것, 저 어르신 것 겹치지 않게 그리고 (...) 반찬을 싸갖고 주시면 매번 식사 때마다 그 반찬 다 꺼내가지고 캐리어에서 밀고 다니며 “어르신 오늘 잡채해 왔네요 따님이” 이렇게 하고 국 종류는 밑에 내려가서 데워서 또 가져 올라가야 돼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허수

요양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항상 돌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입소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의미한다. 요양시설 근무가 야간에도 돌봐야 하니, 참여자가 근무했던 요양시설의 경우 26명의 돌봄 수급자를 2.5명으로 나누어 1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면 11명이 26명을 24시간동안 교대로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평균 7~8명의 노인을 돌보고, 저녁에는 2명이 근무할 경우 교대로 쉬기 때문에 혼자서 26명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4시간 돌봄 체계를 기반으로 한 관리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참여자 1) “1인당 2.5명이면 제가 낮에도 2.5명을 보면 좋고, 야간에도 2.5명을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총 수로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 층에 어르신들 26분이 계시면 2.5를 나누면, 한 10명. 10명에서 11명의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주간에도 똑같이 11명이 근무하고 밤에도 11명이 근무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야간에는 결국에는 2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명은 두 시간 정도 취침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는 온전히 혼자 돌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낮에는 7,8명 그리고 야간에는 한 26명까지 혼자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인력 충원이 많이 좀 필요한 곳이 요양이기도 해요.”

(참여자 1) “나가고 허리 나가는 것 이건 기본이고, 피부병도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최적으로 이제 옴이라고 옴을 또 치료 과정도 까다롭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이런 약도 발라줘야하고 한 병실이 그게 걸려버리면 전체 그 층이 위험해요. 옴을 수가 있어서 옴이면 이제 바로 비상 걸리는 거야, 전체가. 그리고 어르신들을 기저귀케어 하면서 체위 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돌려드리고 저렇게도 돌려드려요. 욕창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것도 비상인거예요. 그것도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욕창이 걸린 거다 라고 하니까요.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책임이 요양보호사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더 말할 것 없고 결국에는 인력 충원인 것 같고요.”

불규칙한 근무 형태, 존재하지 않는 휴게시간 그리고 ‘공짜’ 노동

요양보호사의 식사시간은 1시간이 주어지지만 교대로 15분만에 끝내야 하고 나머지 점심시간은 관찰일지,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틈나는 대로 소변과 대변 보실 때 마다 체크해야했다.

주간근무(오전 9시~ 저녁 6시) 와 야간근무(저녁 6시~ 다음 날 아침 9시)의 2교대 근무형태에, 한달에 8일을 오프로 쉴 수 있다. 참여자는 근무형태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야간을 이틀 연속으로 근무할 때도 있고 야간근무가 한달에 많게는 11번, 적게는 5번정도 불규칙적으로 하다보니 몸이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은 공짜 노동이다. 9시에 출근하지만 8시 10분에는 스탠바이 하며 야근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해야했다. 새벽에도 휴게시간이지만 현장 대기하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각 참여 해야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자 1)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6시까지 못 쉬어요. 쉬다는 개념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멍 때리거나 그런 게 쉬는 건데 쉴 때마다 빨래 해야 되고 (일지) 써야 되고 중간중간에 QR도 찍어야 돼요. 이 어르신 체위변경 좌측 우측 앉아서 또 이 어르신 소변 봤으니까 소변 하나 찍어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대변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기들을 26명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여자 1) “(요양보호사의) 식사는 A, B조 나눠서 15분만에 끝내면 12시 반에서 1시 정도 돼요 그러면 1시까지는 어쨌든 휴식 시간이라고는 하는데. (식사) 교대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어르신들 관찰일지도 써야 되고 업무 일지를 써야 돼요.”

“(근무형태가) 주간-야간-오프-오프-야간-야간-주간. 이렇게 좀 한 달 치가 예상할 수 없는 근무 패턴이 몸에 적응되지 못하는 형태예요. 한 달에 야간을 11번 할 때도 있고 다섯 번 할 때도 있고 투나잇(이틀 연속 야간 근무)을 연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오프도 오프 같은 경우도 이제 빨간 날까지 한 달에 31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총 8번이잖아요. 8번을 한 달 안에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자 2) “이렇게 누워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피곤하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워 있지도 못하고, 혹시 누워 있으면 전화가 와요. 왜 누워 있냐고. cctv 보고.”

(참여자 2) “요양원도 만약에 9시까지 출근해야하면 8시 10분 정도까지 출근을 해야되는거예요. 라운딩이랑 다 해야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공짜노동, 중간에서 들어가 가지고도 공짜노동. 퇴근때도 6시에 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 이제 또 인수인계 해줘야 되니까 서로 여기서 인수인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공짜 노동이. 그러니까 보이는 공짜 노동과 보이지 않는 공짜 노동이 또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서비스에도 대체인력지원 시급,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요양보호사는 침상에 있는 노인의 기저귀 교체 등 허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겪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급하게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체근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사용할 수가 없다. 보육교사의 대체교사제도처럼 요양보호사의 휴가시 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가 시급하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제외이다.

(참여자 1) “혹시라도 제가 빠지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한 번 더 한나라든지 급하게. 그래서 이제 막 연차 쓰는 것도 많이 좀 눈치가 보이는. 시설은 24시간 동안 돌봐야 되는 것 때문에... 아파서 병원 못 가는 그런 것도 있구요”

(참여자 2) “전직 씨름 선수 어르신 오셔가지고 (연세가) 80세가 넘어도 힘이 엄청 좋으시고

150키로 넘으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 케어할 때도 등치는 남자들은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있기 때문에 진짜 왜소하신 50대, 60대 선생님들이 케어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참여자 1) “그럴 때는 1인당 2명씩 달라붙어도 힘든 건데 그럴 때일수록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긴 하지만 그다음 날은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오셔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참여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해서 아픈게 아니라) 당신들 나이 먹어서 지금 그러는 거니까 해줄 수가 없어.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일을 안 하면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이거 자체가.”

2) 방문요양서비스의 현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어렵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재가방문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 등 시설 종사자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한다. 노인의 집이 일터다. ‘원장님’이 아니라 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다.

4대보험 없고, 퇴직금도 없다

센터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제하는 일도 많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면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³⁾ 그렇기 때문에 민간 센터에서는 한달에 60시간 이상의 업무를 주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원에서 장애활동보조지원과 육아종합지원은 월급제이고 종합재가서비스만 시급제이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합재가서비스를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3)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기본시급, 주휴수당(시급), 연차수당(시급), 교통비, 그 외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기본시급은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 임금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2021년 요양보호사의 최저 기본시급은 8,720원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1일 3시간, 주5일 이상)를 하면서 1일 수당을 더 받는다.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10,464원, 여기에 연차수당 502원이 더해져 모두 합치면 10,966원, 반올림해서 10,700원이다.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5%, 노인의 자기부담금 15%(경제 상황에 따라 감점)로 구성된 급여비용을 받는다.

(참여자 2) 한 센터에서 60시간을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4대보험도 안 들어가는 거고 이 4대 보험도 안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열악한,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열악한 환경이 지속된다. 그래서 민간의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넣어주게끔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라고 끊임없이 외쳤는데 제가 정작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이 되고 보니, 지금 제가 작년 12월달에 직원이 돼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며칠 일 하고, 8월 17일부터 저기 며칠 일 했어요. 근데 그러니 60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여자 2) “4대 보험 들어가신 선생님이 지난달에 4명이었는데 이달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두 명으로 줄어들지 아니면 다섯 명으로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참여자 2) “저희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장애활동보조와 육아종합지원은 월급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종합제가만 시급제거든요, 사회복지 서비스 원이 서울만 월급제예요.”

(참여자 1) “월급제로 똑같이 했었을 때 그래야지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부장님도 여기 어르신 갔다가 오늘, 내일 일 했는데 (어르신이) 마음에 안 들어했어,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 가가지고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하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동을 옮겨다니듯. 공무원들이 옮겨다니듯. 이런 것처럼 월급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이 질 좋은 거는 할 수가 없어요. 1시간짜리 해가지고 어떻게 그 어르신한테 저 한 시간 했으니까 같게요. 이게 되겠어요. 어르신 대변 보고 있는데 저 한 시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월급제로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어쨌든 정책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저희 노후는 없습니다. 저희 노후요.”

돌봄 대신 밀린 설거지, 빨래에 발일까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보면, 방문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거나 받아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 노인 가족의 밥과 반찬을 하거나 온 집안을 대청소하는 일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은 “다른 아줌마로 바꿀 거야”라는 말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이는 공공의 업무를 중년 여성들의 불안정 노동에 맡겨두고, 이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 노인 요양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다.”⁴⁾

4)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1부 돌봄orz ④재가요양의 그림자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돌봄 수급자 몫만 정확히 갈라서 하기 힘든 상황, 김치(김장) 담는 것, 밭에서 일하는 것까지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서비스 시간이 보통 2~3시간 미만인데 2시간 이상 화장실 청소만 하고 오신 분도 있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할 영역의 업무가 아님을 표현했을 때 일을 그만둘 수 있기에 거절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방문서비스의 매뉴얼이 있지만 각 센터에서 이를 수급자에게 제시하기도 힘들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도 넘쳐나기 때문이다.

(참여자 2) “만약에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금요일까지만 가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먹은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져 있는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빨래가 그 속에 다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데. 어르신 것만. 또 빼 갖고 넣어놓는 것도 또 이것도 또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장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거. 밭일, 광주도 나름 밭일 해야 되는 곳들이 꽤 되거든요. 임곡 같은 데 그런 좀 시골 쪽은.”

(참여자 2) “이제 혹시 내가 잘못 보여서 일을 못하게 하면 내가 손해니까 어지간하면 다 하려고 하고. 2~3시간 출근해갖고 2시간 이상 화장실 청소만 했다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제 조금 (일해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용자에게) “이건 무슨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센터에 전화해서 “나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다른 사람 보내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해고 당하는 거야. 그냥 파리 목숨인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재가선생님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자체가 하여간 아니면 말고라는 그 파리 목숨 신세죠.”

3) 코로나 상황으로 더 가중된 노동 그리고 고립감, 스트레스

보호자의 면회 차단으로 보호자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요양보호사가 아무리 세세하게 챙긴다고 하여도 보호자가 보기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외부 강사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프로그램까지 기획 및 진행하였고, 잦은 소독으로 업무가 가중되었다.

한편 잦은 코로나 검사도 힘들었고, 일주일 이상 코호트 격리를 겪기도 했으며 GPS로 동선이 실시간 감시되고 있고 집-요양원 외엔 갈 곳이 없어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822.html#csidxdf51b040bd0826c8bc17ad42ae20931

(참여자 1) “(시설에 근무하셨던 다른 선생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콧구멍 쭉시는 게 너무 힘들다. 코피 나겠다. 이건 기본이고요 (...) 새로 오신 선생님이 코로나에 양성이 나와 가지고 코호트 격리가 그 한 층이 다 되어버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집애를 못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구요.

(참여자 2) ”코로나 때문에 아까 외부 강사 끊기는 거, 물론 그 시간에 저희가 좀 쉰다라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 강사 오면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못 보던 것도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에도 어떤 시설은 외부 강사를 많이 투입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1)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고 어디 갈 데가 없다라는 거. 하다못해 건강 때문에 사우나에 가서 땀을 좀 빼야 된다는데, 하다못해 친구들과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근데 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집 요양원 집 요양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인 노동을 어디에 해소할 데가 없어서 선생님들 간에 마찰도 분명히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런 거 푸는데 좀 어렵지 않나.“

4)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돌봄 : “존엄 케어”

누구나 결국 늙고 돌봄없이 노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으며 지낼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노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함을 뜻한다. 참여자들은 “존엄 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존엄 케어는 환자 중심 케어를 만들 말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 외 청소, 빨래, 식사 배식 같은 노동은 전담 인력을 두고,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1.5명 (1:1이면 더 좋겠지만) 으로 24시간 돌봄 체계를 기반으로 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최저 시급에 머무는 임금 체계도 변경되어야 한다. 근무 시간 전후로 발생하는 노동 시간에 대한 수당 보장, 휴게 시간 보장, 필수노동자로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존엄성 보호가 요구된다.

(참여자 2) “네 진짜. 우리 주변하고 정말 무관하지 않아요. 바로 직계 또는 진짜 옆에 친구, 부모님, 언니, 내 주변 어느 누구든지 한 분 정도는 장기요양 혜택을 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바꿔야 된다. 내가 받을 때 됐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상황은 아니어야 한다. 존엄케어를 하려면 진짜 우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야기(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 조금 하고 있으면은 일이 밀려버리니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1) "빨라 해야 돼. 빨리 접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은 그런 분야로 따로 인력 충원을 하고, 이런 일들(노인 돌봄)은 선생님들(요양보호사)은 정말 오롯이 해야 되고, 진짜로 우리가 존엄을 받아야 어른들한테 존엄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절대 존엄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안 한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존엄 케어를 하려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최소한 1.5명당 정말 우리는 1대 1이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좀 정말 최대한 양보한다고 그러면 1.5명당 한 명은 돼야만 진짜 이 존엄 케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참여자 2)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국가가 책임자라는 말은,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감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와 감시가 되든,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기관장들한테 이게 공무원으로서 너네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정책이 (...)"

(참여자 1) "저희 구호는 "존엄 케어 하고 싶다" 이거예요
저희 노후니까, 우리 노후를 후손들한테 받으려면 우리가 잘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 어떻게하면 국가가 책임지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인가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본인이 부모님들을 모시지 못하는 거를 요양보호사가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모시는 거에 대해서 보호자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 노동자로서 필수 노동자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본인 부모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엄 케어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을 반드시 국가에서 만들어서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소리고 (...) 이 매력적인 요양보호사를 하려면 그만큼 대우도 좋아져야 됩니다."

4. ‘아픈 가족 돌봄 집담회’를 통해 본 돌봄 불평등

○ 참여자 정보

	나이/성별	돌봄 대상	질병	돌봄 기간
참여자 1	60대/ 여성	시어머니	노인성 질환	4년

			(뇌경색, 치매)	
참여자 2	60대/ 여성	배우자 시어머니	만성질환(신장투석환자) 뇌종양	4년 3개월
참여자 3	60대/ 여성	친정어머니	치매	5년

사회적 돌봄체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 등 가족에 의한 돌봄은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가족을 간병하는 이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노인돌봄을 담당해 오던 기관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이는 돌봄을 받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 뿐 아니라 돌봄을 주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가족 내 질병 돌봄의 현실

가족 내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은 누구인가?

가족 내에서 누가 돌봄을 담당하게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의되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참여자가 주돌봄자가 된 이유는 내가 딸이기 때문에 혹은 배우자가 장남이기 때문이었다. 이미 다른 자매나 시누이들은 또 다른 돌봄의 주체자(시어머니를 모시거나 손주 돌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가족조사’⁵⁾ 연구를 보면, “현재 주돌봄자로서 돌보고 있는 노인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딸(35.0%)과 며느리(36.7%)가 70% 이상이었고, 다음으로는 배우자(15.6%), 아들(11.0%) 순이었다. 돌봄전담자의 85%가 여성이었다. ‘돌봄 =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막내 시누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

5) 2019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센터장 은기수)의 전지원·문현아 박사 등이 수행한 연구.

지셨는데 그 전에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하는 상태가 있었다. 치매 진행 과정 중에 그런 상태가 있다. 우리 부부가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개입을 자주 했었다. 3년 정도를 시누이가 모셨고 (이후) 판단을 내렸다. 막내 시누가 그 정도면 오래 모셨다. 내가 모시겠다했다. 남편이 장남이다. (...) 다른 시누분들은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있지, 일하지, 손주보지, 본인들 입장에서 불편하죠. 당연히 장남이기에 당연히 모신다고 생각했었고 (...) 가족들 중에 하나가 (희생은 아니지만) 누군가 맡아야한다.” (참여자 1)

“ 셋 중에 누가 모실거냐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딸이었던) 나. 엄마가 광주에 계시 때는 내가 들락날락했다. 엄마가 거동이 힘들어져 혼자 계시기 힘들어지자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나의 조건은 못 모신다고 보았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쪽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가져갔다. 결국 큰아들이 모시고 갔다. (...) 유교문화가 체화돼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많이 가져간 큰 자식이니까. 그리고 엄마로서 그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참여자 2)

“ 누구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형제가 저랑 남동생 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내 아이들 셋을 키워줬어요. 내 숙명이고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여자 3)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가족 간의 돌봄 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주간보호서비스를 사용한 참여자의 경우, 점심까지 드시고 오면 저녁 5시 이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평일은 하루 평균 5~7시간씩 가족을 돌봤다. 주말에는 다른 가족(참여자의 딸)이 한 끼니를 책임져 주거나 반찬을 해주거나 장을 봐다 주거나 하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돌봄 대상자가 위중하여 주간 보호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하게 됐을 때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장보러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바로 옆 침대에 대상자를 모셔두고 24시간 밀착하여 돌봄을 하였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 쉴 수 있었다. 돌봄의 분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집에서 혼자 아픈 가족을 돌봐야 했다.

“주간은 주간보호. 아침8시에 주간보호가서 아침 점심 드시고요. 대소변은 가리셨지만 저녁에는 거동이 불편하시니 기저귀 채워드리면 돼요. 제 딸이 휴일에 도와줘요. 휴일에 딸이 점심을 차려주고, 내가 저녁 담당하고요. 대신 딸에게 용돈도 줍니다. 딸이 안 도와주면 못 해요.” (참여자 3)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민원 들어오고. 밖에 혼자서 나가불고, 그래서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옆집에서 지구대에 전화하고. 시끄럽다고. 옆집 택배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셨다. 주보호에서 밥만 드시고 나와서 다른데 가불고 그러셨었다. 그래서 찾아다니고..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했고.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상한 소리내는 것도 있었고. 처음에는 내가 잘 몰라서.. “어머니 하지마셔” 라고 했는데 뇌가 작아져서 그렇다고 하더라.” (참여자 3)

“시누이가 반찬 해다주고 엄마가 원하는 고기 사다주고. 원래 같이 살았던 시누는 일주일에 1번 와서 당번 서주면서(목요일 하루 와서 자고 낮에 주간보호 가는 것까지) 일주일에 하루, 나의 짐을 책임져줬어요. 형제간의 협력이 있어서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힘들었지. 24시간 뇌가 쉴 수가 없으니. 온신경이 진짜(...) 요양보호사 오시면 장보러 정도만 가고, (혹시나 침대에서 떨어지실까봐) 침대를 옆에 두고, (시)엄마 여기 나 여기. 아기 키우는 것 같이 24시간 온 신경이 진짜.. 안테나가 가동했다.” (참여자 1)

한 인간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하여 : “내 마음 속에 죽이 끓었다”

참여자들에게 돌봄 대상 가족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 긴장 등 돌봄 상황 자체에서 오는 죄의식, 우울감 및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돌봄으로 인한 소진, 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있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죄의식이 상충하여 더 큰 스트레스를 야기했다.

“내 마음 속에 죽이 끓었다. ‘내 마음 속에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서 ‘어머니라면 안 살고 싶으셨을 것 같다. 그만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과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딜 보내’라는 생각의 충돌이 있었죠. (...) 시어머니 아니고 한 인간을 책임진다는 것이 많은 깨우침을 얻었죠.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쓰레기같아, 악마같아. 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알기에... 시누에게도 주변에게도 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4시간 뇌가 쉴 수가 없어요. 온 신경이 진짜... 그러다가 내가 한번 아프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때 요양병원도 알아봤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예쁜 치매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남편의 웃는 얼굴이 저렇게 좋은데... 내가 마음정리를 했죠. 한 인간을 내가 책임지고..하지만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도 힘들었죠. 죽을 끓죠.”

그래도 탈출구가 있었다. 시누이들이 “너 힘든 거 원치 않아,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 모셔”라고 했어요. 내가 시누이 입장이라면 나도 미안하고 불편할 수 있었을텐데(...) 워낙 남편이 오면 한 두 시간 잘 놀기도했어요. 엄마랑 손뼉치고. 그게 참 좋았어요. 남편 생에 제일 행복

했던 시간이었을거예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참여자 1)

“내 (아픈) 배우자가 더 힘들지. 나도 힘들기야 하지만 나의 위치는 문 밖에서 들여다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항상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나도 이런 느낌이고. 돌보는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 쉽다는 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참여자 2)

“시어머니가 10년 살고 돌아가셨는데 수시로 갈등을 느꼈어요. 밋고 짜증나면서 대문 탁 닫고 출근하면 잊어버려. 그만두라고 해도 (회사를) 다닌 이유가 내가 삼시세끼 어떻게 챙겨. 근데 수시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왜 다른 가족들은 안 모시면서 정신적고통을 안 당하고 사는데 나는 왜 안 좋은 감정, 미운 생각이 나는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여자 3)

“5등급 정도라도 받아야지 양로원 요양원에를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시설 등급을 받아 봤어요. 제가 한번은 쓰러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 혹시라도 내가 정 힘들 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등급 테스트를) 받게 해달라 했어요.” (참여자 1)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무기력함을 동반한 신체적 고통, 버거움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신체화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치매가 유전되어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또한 늙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불안 스트레스도 보였다.

“내가 보호자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배우자는 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협에 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위기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점이 내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고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 가슴이 탁탁 하면서 나는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도 걱정도 되고. 모든 것이 돌봄이 답답해.” (참여자 2)

“나이가 드니까 질병이 오고 질병이 오니까 돌봄을 하고, 다 연결됐다.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 암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거의 다 극복이 되고 치료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치매는 왔다하면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 유전성이 있다고 하니까 돌봄을 하면서도 항상 나를 생각하게 된다. 나도 그러지 않을까.” (참여자 3)

2) 우리가 상상하는 돌봄 : ‘존엄한 노년’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나이 들, 질병에 대해 떠올렸을 때 참여자들은 이미 치매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돌봄을 수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돌봄의 막막한 무거움을 알고 있었다. 희망보다 긴장, 불안, 답답함 같은 감정이 떠오르고 두려워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바로 나의 노후 그리고 우리의 노후였다.

“돌봄, 질병 관련해서는 긴장, 불안, 초조한 고민들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늙어가는 것이고 나도 지금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니까. (...)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구나, 잘 먹고, 잘 싸자. 감정들이 오락가락하고 무기력해지는 느낌도 든다. 초조, 불안. 사고 나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일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살면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참여자 1)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모든 돌봄이 답답해.” (참여자 2)

“지금 생각은 더 나이들면 모르겠지만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독버섯, 복어알을 구해서 먹고 죽을까 이런 생각. 그럴만큼 치매라는게 우리 아빠도 그거로 많이 힘드셨어요. 아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아들이 얼마나 아빠가 아프면 와이프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직장을 그만뒀라. 그럴마음이 있다면.” (참여자 1)

“다양한 케이스를 몇차례나 했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남자보호자는 별로 없어. 남편이 몸이 건강해도 돌봄을 할거냐? 못 할거다. 그렇지만 나의 자식들에게 그런 돌봄을 바랄수는 없어. 확실하게 뭘 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봄을 생각하면 머리가 무거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 두려워서 안 보고 싶다. 워낙 먼 미래를 생각 안 한다. 내일일 걱정 잘 안 한다. 대비를 한다. 그러나 이 질병만큼은 대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덮어놓고 그때 가서. 회피적이다.” (참여자2)

더 나은 돌봄에 대해 말하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⁶⁾ 공공시설과 민간 시설의 환경, 서비스 등의 질적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요양제도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질병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몸이 아픈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드는 것 그래서 아픈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아픈 몸을 돌보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일이다.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또는 이른 나이에 진단받는 초로기 치매의 경우 수치심에 숨게 된다. 아프면서도 사회적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단절되지 않고 나의 일상을 주체적으로 유지하며,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이 존엄한 돌봄이다.

“요양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입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으니 요양보호사를 10명 올리고 1명이라도 덜 쓰기도 하고 (...) 그래서 이제 보험병원에서 운영한다든가 저기 시립 치매요양병원 같은 데 공공이 운영을 하면은 개인 이익 창출을 신경을 안 쓰니까 요양보호사도 많고, 시설도 좋고, 그런 곳 가고싶지. 그런데 장성에 있는 유명한 요양원이나 시립요양원은 대기가 많아 몇 년을 기다려야 한 대요.” (참여자 3)

“특히 천주교 시설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은요. 굉장히 깨끗하고 밝고 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대기자들도 많죠” (참여자 1)

“모든 시설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그런 데를 이용을 하고 또 거기가 너무 비용도 비싸지 않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참여자 2)

6) 한국보다 40년 빠르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 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마련하고 전체 의료비 지출의 48%가 노인을 위해 쓰인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많다. 시설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방문요양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이 주류를 이루는 영국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고,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지도 감독하고 불시에 조사를 하는 권한이 있다. 시설 사용자나 가족 등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정집처럼 운영하면서 노인 스스로 삶의 여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도 1인실이나 2인실로 만들어 사생활을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 부정 청구를 했을 때 형사 범죄로 규정해 10년 이하 징역과 약 2억 8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한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사기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뿐이다. 출처:

“치매가 왔을 때 옆에 사람이 아 이야기를 걸어주고 거기서 막 서로 대화하는 것이 자주 있어야 이게 덜 진행이 된대요. 그런데 말을 걸어줄 시간이나 있나(요양보호사들이).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보호사가 와서는 청소하고 밥해주고 그런 일만 하고 가지.. ” (참여자 2)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 거의 10년 이상 살아요. 혼자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 그런데 치매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활동을 해요. 전부 사회적 소통이 다 단절이 돼 버리면서 치매의 어떤 기능 자체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5. 나가며

‘돌봄에 화난이들 다 모여라 집담회’는 유·무급 돌봄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구조의 불평등함, 부정의함을 가시화하여 지역에서 돌봄에 관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표였다. 돌봄 노동은 인류가 생존하려면 단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이다. 주로 여성의 역할로 가정내에서 무급으로 전담해 왔던 돌봄 노동이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면서 일부는 탈가족화되었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의 돌봄 노동은 무급의 노동으로 가족에 남겨져 있다.

‘팬데믹 속의 독박육아 집담회’를 통해 본 돌봄의 절에서 전업주부나 워킹맘들은 돌봄노동을 배우자와 평등하게 나누지 못했다. 한 끼니를 만드는 것에도 여러 과정이 있듯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는 않는 노동의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세세한 과정까지 하나하나 배우자와 나누기 힘들었고, 가족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살피는 것, 아파서 학교에서 호출이 올 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노동이나 마음의 책임까지 나눠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전히 아이를 돌보거나 밥을 하는 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의 영향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루 아침에 학교가 폐쇄되고 도시가 봉쇄되었을 때 자녀의 학습, 재택근무하는 배우자의 돌봄까지 더해져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되었다. 긴급돌봄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워킹맘의 경우, 비슷한 상황의 여성과 연대하여 자녀 돌봄을 나눌 수 있었다. 돌봄 체계의 틈새를 온전히 여성들이 메우고 있었다. 전업주부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속에서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며 혼자 있는 시간을 절실히 바라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돌봄 집담회’를 통해 본 돌봄의 절에서 유급 돌봄노동을 다루었다. 장

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 돌봄이 일부 탈가족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양시설의 24시간 시간표를 통해 시설요양보호사의 노동의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직원배치 기준으로 낮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평균 7~8명의 노인을 돌보고, 야간에는 최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며 심야에 요양보호사 1명이 전체 인원(26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었다. 최소한의 인원에 의지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지킬 수 없었고, 돌봄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다. 대체인력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쉬려면 다른 동료들이 긴급하게 출근해하는 상황이었다.

방문요양서비스 체계에서 민간 센터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강제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해 4대 보험, 퇴직금도 없는 현실이었다. 돌봄 대상자인 노인 및 보호자가 원하면 주말 내내 밀린 가족의 설거지나, 빨래 심지어는 발일까지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일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

노인돌봄에서 말하는 ‘존엄 케어’를 위해서는 돌봄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돌봄을 주는 사람에게도 상호 적용이 되어야 한다. 적절한 노동시간과 노동 인력, 적정 임금, 휴게시간 보장, 4대 보험과 퇴직금의 보장, 사회적 인식개선 등 모두의 존엄을 위해 바뀌어야 한다.

‘아픈 가족 돌봄 집담회’를 통해 본 돌봄의 절에서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돌봄은 일부는 장기요양제도 같은 돌봄의 사회화가 되었으나 역시 가족 내에서 여성의 무급 노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떤 합의의 과정을 통해 누가 돌보게 되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결혼하지 않은 딸, 며느리, 장남 등 가부장제적 전통적 인식으로 개인이 지게 되는 부담이 여전했다.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컸다. 돌봄 상황 자체에서 오는 걱정, 긴장, 불안, 죄의식, 고립감 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정신적 소진, 건강 악화가 있었다. ‘요양보호사 돌봄 집담회’를 통해 본 돌봄 노동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던 점이 주목할만하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주는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연결되어 있다.

유·무급 노동을 불문하고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누구인가. 여전히 이 질문은 중요하다. 돌봄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은 언제든 유급 노동의 돌봄이 무급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 어린이집, 학교, 주간보호시설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았을 때 돌봄의 공백이 결국은 가족 내 무급 돌봄노동으로 대체되었음을 우리는 직접 보았다.

무급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과 유급 돌봄노동이 지속적으로 저임금 노동의 일자리로 머무는 현실은 상호 영향을 받으며 강화될 수밖에

에 없다.

모두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고, 결국 돌봄의 대상이 될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존엄한 미래를 위해 돌봄을 우선시하고, 돌봄을 세상의 중심에 둔 사회를 감히 상상해본다. 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현재 돌봄 체계에 수 많은 틈과 불평등한 구조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시간 부족으로 1인 가구 집담회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자료집을 재배포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ERIES/1224/home01.html>.

장지연·윤자영·전지원·Elizabeth King·은기수·Ito Peng·차승은(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한국노동연구원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20년 1호

전희경(2020),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보호자’라는 자리”,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봄날의 책

더 케어 컬렉티브(2021), <돌봄선언>, 니케복스

한국여성민우회 주최 토론회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 89명의 여성인터뷰와 1,253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자료집, 2020년 10월 28일

거리두기의 시대, 거리두기 불가의 노동

-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김지영(전남대 여성연구소)

코로나가 문제의 시작이었던가?

- 직업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짐
- 활동보조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으로서 활동지원사의 탄생
-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애계의 요구가 있어으나, 정부는 전달체계 마련 미비, 제공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였음
- 여기에 장애인 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위기 담론이 부상하자, 이 위기를 해소하면서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에 의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었음. 즉 돌봄의 사회화가 시장화를 통해 진행됨
- 여성들이 젠더화된 노동체계에서 무급/저임금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시장의 형성은 여성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강한 유인이 되었으며 노동시장 2차부문에서 더 나은 공공부분 일자리로 상향이동할 기회가 제공되었음
- 즉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는 그 자체로 개인화된 부담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이 약한 기반을 드러냈을 뿐 위기의 출발점이 아님

돌봄에는 ‘거리두기’ 가 없다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

- 비대면 비접촉 거리두기
- 자가격리 재택근무 잠깐멈춤
- ✓ 팬데믹 극복을 위한 일시성 전제

장애인 돌봄의 특징

- 대면 밀접 의존성 지속성
- ✓ 원초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

돌봄에는 ‘거리두기’ 가 없다

- 인생을 관통하는 여러 시기에 필연적이고 연속적인 성장과 노화의 과정 외에도, 질병, 장애와 같은 취약성의 순간들로 인해, 인간은 돌봄을 필요로 함
- 누군가는 덜 의존적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더 의존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의존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
- 팬데믹의 시대에 ‘거리두기’, ‘재택근무’, ‘자가격리’가 새로운 생활양식의 일부로 등장하고 있지만, 장애인 돌봄은 기본 전제부터 이러한 방식과 모순적
- 장애인 돌봄은 유기체로서 신체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몸과 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불가능. 특히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에 있어 ‘재택근무’는 새로운 노동방식이 아니며,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도록 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궁극적 취지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게다가 ‘자가격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함
- 필수노동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는 순간과 여백을 채워야 하는 순간 모두가 위기화됨

팬데믹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연도	전체 대상자 수	계약 등록자 수	계약 미등록자 수	비율	전년 대비 미등록자 증가율
2017	82,636	77,767	4,869	5.89	-
2018	89,486	83,979	5,507	6.15	13.1
2019	99,173	92,945	6,228	6.28	13.1
2020	108,066	100,197	7,869	7.28	26.3
2021. 7	112,958	103,567	9,391	8.31	19.3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팬데믹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비사용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생성인원	생성 금액	결제 인원	결제 금액	미사용인원	미사용액	전년 대비 미사용액 증가율
2017	82,636	939,382	77,767	929,625	4,869	9,757	-
2018	89,486	1,174,443	83,979	1,162,956	5,507	11,847	17.7
2019	99,173	1,546,243	92,945	1,531,753	6,228	14,490	26.1
2020	108,066	1,841,006	100,197	1,819,190	7,869	21,817	50.6
2021. 7	112,958	1,240,972	103,567	1,214,884	9,391	26,089	19.6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팬데믹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매칭 현황(2020.3~2021. 8)>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	합계
노인	364	3	3	32	56	458
아동	38	14	3	66	0	121
장애인	72	0	13	14	0	99
기타	2	0	0	0	0	2
합계	476	17	19	112	56	680

자료: 최혜영의원실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될 때

감염의 위험

- 장애인 돌봄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밀접한 신체접촉이 필수적이며, 마스크 너머 몸의 오물과 폐기물을 다루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 높음
- 감염되지 않거나 스스로 감염원이 되지 않기 위해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사회활동을 축소하고 검열함

돌봄의 장소가 '집'으로 한정

- 활동지원서비스가 다른 돌봄노동과 가장 대별되는 것은 '요양'과 '보호'가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이 목적이라는 점
-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돌봄의 장소가 '집'으로 한정되면서,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 여백을 채워야 하는 것은 돌봄노동자의 몫이 됨(물리치료 및 각종 프로그램의 대체재로서 활동지원사)
- 사적 공간/달린 공간인 '집'은 단절의 공간일 뿐 아니라 갑질, 성희롱, 학대가 일어나는 폭력의 공간일 수 있음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활동지원사에게는 실직/수입감소 위험

- 자가격리, 감염위험을 이유로 한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요청, (제한적으로나마)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는 실직이나 수입감소의 위험에 처함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위협과 단절

-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공적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장애인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며, 극단적인 경우 생존의 위협 상황에 놓임

가족에게는 돌봄부담의 증가

- 공적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때, '믿을 것은 가족 뿐'이라는 낡은 가족 이데올로기에 다시 힘이 실리고 돌봄의 탈가족화에 대한 역행이 이루어짐

코로나 시대 가족 부담의 재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

-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포함한 가족 돌봄이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 되거나

코로나로 인한 변수와 일상의 무너짐

-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중요한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립생활훈련의 패턴이 깨어지고,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가족간 스트레스가 심해져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거나

돌봄자원의 부족과 돌봄 공백

- 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돌발변수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장시간 혼자 둘 수 없다는 것 또한 돌봄의 위기 상황을 만들거나

무엇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고립으로 변형하는가

-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은 필수노동이지만, 취약한 사람들의 활동은 경제적 생산성을 갖지 않으므로 필수적인 것이 아님
-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장애인과 돌봄노동자의 양자관계로 축소
-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소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공적/사적 관계들이 단절됨. 공공기관이 폐쇄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짐
- QR코드, 체온측정기 등 '위험하지 않음', '내부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절차 역시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됨

약한 고리가 먼저 깨지는 것일 뿐

- 장애인의 ‘자립’이란 사회적 조건의 총체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현재의 ‘자립’은 독립적인 개인을 상정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
-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선택권이 강화되면 이용자는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현재의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지원사 또한 이용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할 수록,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록 장애인의 선택권은 보장받지 못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 서비스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지만, 팬데믹은 장애인의 ‘이용자’,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얼마나 약한 것이었는지,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충분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를 남김

나가며

- 코로나 이후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호명하면서 어느 때보다 돌봄의 필요성과 위기를 역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자에게 ‘당신의 노동은 필수하지만 당신은 필수하지 않아요’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회에서 고통의 목록을 추가 갱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냥 어른들말고, 우리 학생들도 20살 이하 아니면 몇 살 이하로 그냥 재지 않고. 뭐랄까, 그냥 어른되기 전에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도 우울할 테고 우리들도 우울하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도 더 우울할 테고. 그러니까 18세 미만 사람들은 여기다 하고, 18세 이상부터 몇 살까지는 여기다 하고 반반으로 나눠 가지고 (체험도 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시 않나요?”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아동 지역사회 돌봄환경 개선방안>, 광주여성가족재단, 2021)

감사합니다.

‘가족 밖의 가족’이 던지는 질문, 돌봄의 위계와 폭력7)

추주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코로나 팬더믹, 가족 안전망의 부상

코로나 팬더믹 이후, 가족의 가치와 돌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돌봄과 안전이 다시 사적 영역을 통해 담보되는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팬더믹 이전에도, 가족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구조변동과 위기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기하고 재구성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과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 연령 및 재생산 지표 속에서 가족의 위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논의이기도 하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1이하로 내려갔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전반에 걸쳐 올 변화는 ‘지방소멸’, ‘학령인구의 감소’등으로 또 다른 사회 위기로 전화되었으며, 또한 청년세대의 삶의 가치관 및 생애주기 변화로도 나타났다. 2040세대에서 가족 내 고령자를 부양하는 책임, 결혼-출산-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표준적 생애주기에 대한 거부와 포기의 양상은 이 모든 변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의 모습은 다양성의 측면보다는 해체적 의미를 더 담게 된다. 점차 불안정한 삶이 확대되면서, 혈연과 이성애 중심의 제도에 기반한 가족의 지위 역시 불안해졌다.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근대 산업사회의 초석이 되었던 남성노동자-일인생계부양자 모델과 돌봄의 책임 주체로 가족을 호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사회적 위기 앞에 가족과 집은 곧

7) 이 글의 4절은 “가족의 경계와 질서의 재구성: 탈가정 청소년의 ‘팸’ 생활에서 나타나는 돌봄과 친밀성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 겨울호(통권 128호))의 일부를 요약하여 소개함을 밝힌다. 또한 이 글은 다른 지면을 통해 소개될 내용으로 인용을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라질 것 같았던 ‘가치’를 다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당사자에게 ‘가족’과 ‘집’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잘 알고 있듯이, 가족 다양성이든 가족 해체가든 모든 이가 안전망으로 여겨질 만한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 위기 또는 위험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위기 앞에서 다시 확인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더 정확히 말해, 타인들과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실질적으로 감염의 예방과 안전에 최적화된 공간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집’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계급적 자산’이면서도 동시에 안식처나 유일한 피난처로서 그 의미가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일차적으로 보호와 안전망의 구실을, 집은 돌봄과 안전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공간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궤적에서 현재와 같은 위기가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 내는지 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혹은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가 계층, 인종, 성, 지역, 장애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청년들이 현재 겪는 문제가 비단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있던 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내부의 차이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같은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정책과 제도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과 청년의 가족구성과 관련한 가족정책, 엄밀히 말해, 인구정책은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두 정책 속에서 청년은 동일한 정책적 대상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청년 정책과 더불어 청년을 지원하는 법령, 조례 속에서 청년은 전 사회 영역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청년은 무엇보다 가까운 미래의 자립할 개인이자 자신들의 사회적, 시민적 권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기도 하다. 반면에 가족 정책은 혼인과 혈연 등 특정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청년 개인보다는 청년에 속해야 하거나 속해 있는 가족 형태에 의존한다.

동시에 가족 정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유예하거나 거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때의 청년은 마치 적자생존의 경쟁 속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 이익의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개인이자 결혼과 출산을 선택(거부)하는 자발적이면서 때로는 이기적인 개인으로 비춰진다. 두 정책과

8) 구은정. 2019. “일과 삶의 균형, 그 이론적 함의” 『경제와 사회』 123: 155-181. 최선영·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한국 사회학』 46(2): 203-230.

제도에서 청년은 한편으로는 불안한 노동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유예하는 존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 이해타산에 따라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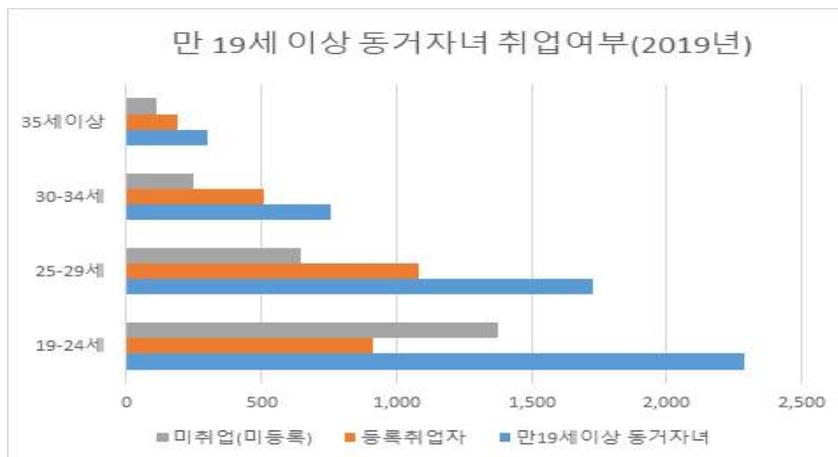
그러나 청년들의 만혼현상, 무자녀와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청년들이 자기 삶의 효율성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지, 혹은 ‘좋은’ 양육과 중산층의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재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형성에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감내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인지는 불분명하다. 실제로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연구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청년세대의 가치관이 달라졌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현실적 가치관의 변화를 표준적 생애주기 쇠퇴로 바로 연결시키기 어렵다. N포세대로 불리며, 모든 사회적 관계와 생애주기 속 과업을 유예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학벌, 외모, 직업 등을 선별하여 ‘계급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데이팅 앱과 소개팅 어플이 성행하며, 믿을 만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집착하면서 더욱 더 사적 친밀성을 형성하는데 집중한다. 30대 기혼-청년 여성의 경우, 이른바 ‘워라벨’(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만 이들 신자유주의 사회의 양육방식을 적절히 따라야 하는 모성적 실천이 요구된다. 이렇듯 청년들의 생애주기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현상을 통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설명틀을 찾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순 속에서 놓여 있는 청년들의 생애 궤적과 삶을 모형화하여 설명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있어서 가족은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상수 위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변화를 맞이하는 청년들은 사회적 차별과 갈등, 혐오와 불신을 경험한다. 따라서 기존의 청년에 대한 프레임 속에서 청년 당사자에게만 주목하는 것은 청년을 둘러싼 혹은 청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안전망의 의미와 한계를 가시화하지 못한다. 동시에 가족을 통해서만 청년을 인식하게 될 때, 청년은 자기 이익과 가족 전체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 역시 하나의 가용자원으로 여기는 목적합리적 행위자로 인식되거나 원가족의 질서와 유대관계에 수동적으로 매인 관행적 행위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가족을 놓고 청년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수로서 가족만이 가장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지역 청년의 삶이고, 두 번째는 이 상수마저도 사라진 ‘벌거벗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청년의 삶이다.

2. 가족에 파고든 청년의 삶

모든 청년들이 가족 안에 머문다고 볼 수 없지만, 이제 취업하지 않고 중장년 부모와 사는 일종의 ‘캥거루족’ 청년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2020)에 따르면, 중·장년 연령에 해당하는 가구 중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비중은 58.1%이며, 이 가운데 20대 이상은 35.5%였다. 특히 중·장년 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자녀 중 미취업 상태의 자녀(2019년 10월 기준)는 46.8%(237만 6천 명)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5세 이상의 미취업자는 평균 35%정도 이다.⁹⁾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특히 지역 청년들 다수는 성적과 집안 형편 등의 이유로 지역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취업전망을 가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취업준비 과정에서의 비용과 구직실패를 통해 체감한 부담은 지역을 떠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지역에 머물겠다는 청년들의 의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연대감 보다는 경제적 자원의 한계와 불안정한 노동패턴, 장기화되는 미취업 기간 때문에 주거 상황을 제약한 결과이기도 하다.¹⁰⁾ 그러나 불안과 초조함, 사회경제적 불안정으로 시공간을 제약했다는 것만으로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의 삶을 단순화하기 어렵다. 다만 수도권 등 지역으로의 이동 없이 가족 내에서 학령기와 취업준비기를 보내는 청년들은 가족을 통한 사적 자원을 개인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여기고 사회적 돌봄의 공

9) 통계청. 2020.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8/index.board?bmode=read&aSeq=386979

10) 추주희·김지영. 2019. “좌절과 불안을 마주하는 지역청년들의 대응과 전략: 구직 중 ‘자기반성’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8(1): 162.

백을 메우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중심적 개인주의는 지역 내에서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가족 안에 머무는 삶은 무한 개인책임주의의 사회적 압박을 견디는 발판이자 ‘승자독식’이 정당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규범에 대한 암묵적 거부 또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를 의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삶의 논리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혹은 지역에 머무는 것만이 이러한 삶의 논리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경쟁적이고, 물질적인 이점만을 고려하는 사회체계에 저항하고자 지역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의 청년들은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라거나 원가족에 의존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이들이 지역에 머무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게 된 맥락에는 단순히 취업 실패, 취업 유예, 취업 준비라는 사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헬조선’이나 ‘망한민국’이라는 신조어에서 볼 수 있듯, 오늘날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광범위한 환멸을 불러 온 사회적 관계 맥락의 이면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 즉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족, 우정, 사랑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유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다면, 한국사회에 대한 불신의 방향은 어디가 될까? 반대로 유일하게 불신하지 않는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시장 논리의 붕괴와 불확실한 관계, 진짜 친구와의 우정,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해질수록, 가족 내에서 상호의무와 헌신, 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며, 그나마 안정적인 관계의 실체는 ‘가족’을 통해 재생산되고 담보된다.

모순적이지만,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협소해지고,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수록 가족관계와 다른 친밀한 관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에 대한 부담은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 점점 더 자립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청년들은 ‘후기 청소년기’의 연장 속에서 이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자립’하지 못한 자녀의 양육은 결국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의 옆에 자리함, 또는 부모의 품 안에 파고들을 뜻한다. 우승열패나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가 아니라 비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가족이다. 그 가족이 지역(바로 옆)에 있다. 그 과정에서 널리 퍼져있는 문화적 통념에 기대어 청년들은 가족 안에서 지속적인 모성의 돌봄을 요구한다.

3. '정상 가족'밖, 안전한 '주거'의 밖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안전망 없이 위기를 대면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책적 공백은 '정상가족'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주요한 재난피해자, 즉 일반인과는 달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재난 취약자들의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¹¹⁾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재난취약자, 감염병 앞의 취약성은 다른 방식에서 조명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방역의 약한 고리'라는 이름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수급자격과 무의탁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보호는 사회적 돌봄의 중지를 통해 '버려둠'과 시설 보호라는 '격리와 수용'으로 수렴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만 23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가출 이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은 임시쉼터에서 7일 정도 머무르게 되며, 임시 쉼터의 경우 공간도 협소하고 수용인원도 적은 편이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소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로 인해 결국 청소년 쉼터는 '방역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었다. 방역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쉼터와 같은 청소년들의 보호시설은 수용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수용인원들은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제약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중장기 쉼터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해당 청소년은 쉼터를 떠나 자가 격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공동 거주하던 청소년들이 실제로 갈 곳이 없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활동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는 청소년 쉼터 폐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외출이나 외박의 통제 등 강제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청년기로 진입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는 구직난의 직접적 이유로 언급되기도 하였다.¹²⁾

쉼터와 같은 시설은 위험에 놓인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청년들, 가족과 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에게 있어 어느 정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선도와 재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위기를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속에서 시설이라는 보호망은 언제든지 가장 열악한 수용시설

11) 황은정. 2015. "젠더 관점에서 본 재난취약자에 대한 분석 및 지원방안" 『이화젠더법학』 7(2): 171-199.

12) 「노컷뉴스」. 2020. "가정에서도, 코로나 방역에서도 소외된 아이들". 3월 31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18901>. 「중앙일보」. 2020. "새벽에도 불쑥불쑥 오는데...방역 약한고리 된 청소년 쉼터". 9월 8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67197>.

로서 전략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가족을 자원화할 수 없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자활과 복귀, 안전망으로서의 ‘시설보호’는 더 이상 합리적 관리 방식도, 보호의 방식도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신규 입소 청소년 대부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머물 곳이 없다. 이에 최근 우리들 쉼터에 입소한 한 청소년은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침구를 깔고 생활했다....” (<인천일보>, 2020년 9월 6일자)¹³⁾

소위 ‘성공적으로’ 사회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청년들은 매우 쉽게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인구가 되거나 각종 청년정책과 청년수당과 같은 복지정책에 의존하는 존재로 호명된다. 팬더믹 이전, 헬조선에서 ‘니트’로 명명된 청년들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노동의 문제로, 그 다음으로 인구재생산의 문제를 통해 주목되었다. 이들 집단의 불확실한 생존방식과 노동 불안을 통해 드러나는 청년들의 삶의 비활동성은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들은 원가족과 복지제도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무력한 존재로 여겨진다.

더욱이 코로나 팬더믹 상황은 청년들의 다양한 차이, 젠더, 계층, 지역, 인종 등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 취약성을 ‘모두의 공통적 취약성’으로 단순화한다. 모두의 위기로 치환됨으로써 청년 내부의 차이들은 간과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클럽에 가고 싶어 하는 청년의 모습이나 방역조치에도 거짓말로 슈퍼전파자가 된 청년의 모습 등의 선정적 사례가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표성을 획득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입견적 이미지에 따라 청년은 안일한 인식을 가진 방역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곤 한다. 나아가 팬더믹이 가져 온 고용충격 앞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 청년들에게도 여전히 열정과 ‘노오력’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서사는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한다.

다시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반복적 실업상태 속에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일시적 노동의 연장과 비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하층 계층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청년이 되는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문제는 특수한 차원에서 접근되지 않았다. 도리어 가족 자원을 보유한 첫째

13)「인천일보」. 2020. “코로나 재확산에 여성, 청소년, 노숙인 ‘긴급보호시설’ 이종고”. 9월6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589>.

경우의 청년들과 동일한 경우로 다루어져 왔다. 그것은 청년의 자립에 대한 일반화된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관점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정한 의존’이 용인되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가족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만 허락되고 이해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의존과 자립은 ‘생산적이고 건강한 자기 계발적 주체’의 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비정상적이고 윤리적인 단죄의 대상, 병리적인 문제를 지닌 개인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전문가 집단의 위험평가 속에서 정책의 대상이 될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구분될 뿐이다.

사회적 위기관리에 대한 대처나 안전망은 실질적으로 이들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없다. 청년이라는 연령적 규정과 자립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 내에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될 수 있는 노동자 모델에 근거한 청년 정책은 실질적인 가족 보호라는 안전망을 손쉽게 가린 채 개인의 성숙과 책임에 기대어 있다.¹⁴⁾

또 다른 문제로, 도시에서의 저소득 미(비)혼 청년여성 주거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한마음 아파트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었으며, 주민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을 확인되면서 더 큰 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례는 저소득 여성들의 안전의 공간으로서 ‘집’의 지위와 의미를 보여주며, 동시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 마주침이 언제든지 가능한 공간적, 구조적 조건 속에서 여성들의 주거 전략이나 실천의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게 했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 특히 청년 여성 저임금노동자는 주거지의 안전보다는 접근성 및 주거지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청년 여성들이 종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거주는 단순히 청년들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관계의 지형과 사회구조적 불안정성의 단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마음아파트는 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싼 값에 주거공간을 제공해주는 주거복지사업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도시 속에서 저임금-비혼-청년-여성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생존의 측면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맺는 사적이고, 때로는 지역적인 돌봄 실천, 가족 실천, 관계들을 지지하고 보장하고 인정한 부분이 사적으로 충족되거나 뒷받침될 수 없을 때 역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14) 추주희. 2019. “소년혐오인가 사회위기인가?: 위기청소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경제와사회』 124: 157.

15) 「경향신문」. 2020. “대구 한마음아파트 주민 3분의 2는 왜 신천지 교인이 됐을까”. 3월 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081803001.

한마음아파트의 사례는 적어도 도시의 하위주거 공간에서 청년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종교적 측면과 만나 집단적 주거, 내지 집합적 관계의 측면을 만들어내고, 그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돌봄, 혹은 청년 정책의 주거 정책의 한계 지점을 보여준다. 도시 공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주고받는 방식, 서로를 함께 돌보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대하는 방식,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이 제한된 예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논의 이면에는 여전히 ‘생산적 노동자’, ‘경쟁 속에서도 실패와 패배를 긍정적으로, 혹은 초인적으로 이겨내는 자아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산이 아닌 서로 돌봄, 상호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착취에 근거한 생산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만 하며, 청년의 주거 및 삶에 접근하는 정책 역시 생산이 아닌 관계의 측면에서 재접근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였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안전’은 청년여성에게 어떻게 다시 확보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두 다에서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것, 최적화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포함한다. 실제로 공존의 공간, 상호부조의 공간을 삭제하고, 감염될 수 있는 관계망, ‘깜깜이’로 통칭되는 불길한 접촉가능성, 회피하고 조절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들을 절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이면에는 젠더, 계층, 노동의 조건이 맞물려 있다. 시설 거주 청년, 도시의 비혼 1인 가구 청년들의 사례는 가족에게서 안전과 돌봄을 보증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권리, 돌봄 받을 권리를 사회 속에서 다시 살펴봐야 함을 보여준다.

4. 가족 밖의 돌봄?: 탈가정 청소년들의 ‘팸’에서의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 재조명된 돌봄의 가치와 윤리의 이면에는 ‘좋은’ 혹은 ‘건강한’ 돌봄에 대한 전제가 놓여 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회와 가족의 안녕이 강화되며, 더 강력한 부모와 더 따뜻한 공동체(?)로서 가족이 재조명 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는 가족 내의 돌봄 관계를 살피거나, ‘정상가족’ 범주내의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돌봄의 경험과 이에 대한 해석에 집중한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성애적, 혈연적, 성인 중심의 가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비의도적일지라도 ‘가족주의’의 원형과 경계에 머무르게 된다.

앞서 가출 청소년의 쉼터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직면하게 된 위

힘을 살펴보았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팬더믹 이전에 ‘가출’ 아니, 정확하게는 탈가정한 청소년들의 삶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팬더믹 이전 가정 밖에 있었던 청소년들은 쉼터를 이탈하고 있었으며¹⁶⁾, 2010년대 이후 ‘가출팸’은 청소년의 탈가정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설을 거부하면서 사는 또 다른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다만, 현실에서 탈가정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다. 분명 십대가 ‘집’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탈가정’의 과정은 분명 가출과 연결되어 있으며, ‘탈가정’의 범주 혹은 경계 역시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탈가정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을 구분하는 이유는 ‘가출 청소년’이 그동안 가족이라는 안전망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상태를 문제시하고, 가출 이후의 삶을 비행의 측면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연령은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포괄적이고 통상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¹⁷⁾”를 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반면에 ‘탈가정’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원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혹은 분리되어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의 맥락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어떤 형태로든 ‘집’을 나왔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있는 청소년들의 위치성을 보여준다. 덧붙여서, 생존과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는 ‘팸’에서 헌신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의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감정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감각들이 공유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맥락과 문화가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독립된 개인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함께 돌봄’이라는 “대안”적 모델과도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탈가정 청소년들의 삶은 우리 사회의 ‘돌봄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

가족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칭하는가? 왜 이들은 ‘팸(패밀리의 줄임말)’을 만들어 살아가는가? 반드시 재정적이고 물질적 지원만이 이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원천인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거나 접촉, 상호관계가 약화될 때, 다시 말해 감정적인 애착이 없는 경우, ‘팸’을 가족으로 의미화하기 어렵다. 적어도 사회 속에서 ‘가족’이라는 제도적, 규범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확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의 기초(혈연, 안정적 주거, 성인 혹은 돌봄 제공자 등)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가족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소속감의 표현이자 구성원간의 친밀감만을 표현한다.

16) 쉼터 입소 청소년 가운데 자의퇴소 및 무단 이탈청소년은 2016년도 기준, 16,352명(55.9%)이었다. 박경미. 2017. 「쉼터 찾은 청소년 절반은 제 발로 나간다」, (보도자료: 11월 3일).

17)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청소년백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쉼터를 거부하고,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청소년들은 서로의 관계를 친구가 아니라 굳이 ‘팸’, 즉 패밀리로 호명하는 것일까? 이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팸’으로 칭해진 관계 내의 돌봄과 친밀성, 내부에서 이뤄지는 신체 접촉이나 가족 실천을 이해해야만 한다. 즉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가족 실천의 측면은 단순히 혈연관계나 성애적 관계를 넘어서서 수행된 것이다. ‘팸’을 가족으로 지칭하는 과정에는 개인의 친밀한 생활 연결에 ‘가족적인’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관계적 실체이자 연결고리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친구’, ‘또래’, ‘선배’, ‘무리’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 ‘가족’의 주관적 의미가 변화했으며, 가족은 관계를 통해 언제든지 구성될 수 있는 별것 아닌 것이 되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타인들과 공존을 통해서 언제든지 가족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점에서 “위기탈출”이 시작된다.

그러나 탈가정 청소년들의 또래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 즉 자살, 범죄, 폭력, 생계, 다툼을 통해서 너무 자주 “머무는 자리가 바뀌는” 이들에게 가족을 기존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전시하고, 동일한 가족의 기능이 항상적으로 실천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들의 가족을 이상적인 ‘정상 가족’과 동일하게 혹은 그에 준해서 비교 판단할 수 없다.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없는 관계를 가족으로, ‘가족과 같이’ 라는 인정의 요구로 수렴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 또는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옆에 있어준 팸의 성원들과 그들의 역할은 기존의 가족의 모습과 유사하거나, 가족이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돌봄과 지지의 기능을 이들이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관계는 가족 구성원 자체, 존재 자체(혈연과 같이 자연적으로 주어진)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의해 정의되고 경험된다는 점이다. 결국 탈가정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말하기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특정 시점에서 ‘가족’으로 기능하는 관계, 즉 특정한 시점에서 함께 사는 비혈연 개인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밀도 높은 친밀성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재의미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돌봄이 실천되는 맥락은 지속성과 안정성의 측면보다는 자기가 있는 곳, 즉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서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단 시간에, 또 단편적으로 작은 일상적 경험과 감정을 매개로 실천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돌봄과 친밀함에 대한 전제, 즉 ‘순수하고, 자연적이고, 온정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순간의 필요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개의치 않고 바로 교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관계 내부의 동의 혹은 호의, 그리고 유사 가족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환상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이들의 돌봄의 맥락이 단순히 강압적인 착취 속에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돌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감정과 더불어, 그 관계 내부에서의 역할과 ‘인정’ 받을 만한, 그리고 그 관계에서 존중받아야 할 만한 이유를 스스로 전시함으로써 적절한 관계의 ‘안정화’, 즉 ‘팸’의 가족화가 가능해진다. 그 안정화가 비록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를 수반할지라도, 그것은 탈가정 청소년에게 순수한 관계 또는 혈연적이고 자연적인 관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폭력과 다르다고 느끼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원가족과 관계에서 그러한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아는 탈가정 청소년들이 ‘자연적 애정과 사랑(모성애, 부성애)’이라는 허구를 벗어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으로 이상화된 정상가족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의존과 돌봄은 무시되거나 경멸되기 쉽다. 이는 무엇보다 탈가정 청소년들이 그동안 접해왔던 ‘돌봄’의 맥락과 한계, 특히 남성들이 제공해 온 돌봄의 맥락 때문이다. 트론트(2014)는 보호가 ‘돌봄’의 한 형태이며, 그 과정에서 돌봄의 어두운 이면으로서 폭력이 가시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호주의적 돌봄이 그렇게 보호적이지 않을 때, 보호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호 공갈’이 될 때, 피보호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나쁜 보호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된다. 심지어 보호인의 책임은 피보호인에게 전가되고 피보호인의 권리는 보호인에게 몰수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¹⁸⁾ 청소년 내부에서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내부의 또래관계가 성별화된 위계제와 밀접한 경우 탈가정 내부에서 ‘보호형 무임승차권’을 가진 이들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성매매 포주 역할을 하는 십대 남성, 팸을 관리하는 남성, 청소년들과 공모하는 십대여성, 지역의 조폭 등 폭력의 하부와 연결되어 팸을 관리하는 청소년들의 등장은 이러한 관계나 집단에서 폭력과 착취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들 청소년들 사이의 ‘적절한’ 상호관계는 수시로 역전되며, 공통의 의식과 감정은 남성들 간의 유대 혹은 폭력적 위계관계 속에서 변형된다. ‘팸’의 위계관계와 그 안의 폭력적 경험은 약자끼리의 공감과 연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폭력에 복종하고 권력에 의존하기도 한다.

탈가정 청소년은 또래 집단 속에서 혹은 공동 주거생활 속에서 ‘돌봄’의 제공자 위치에 있지만, 결코 사회 속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공자의 포용적 위치에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매우 불완전하고 우연적이고

18) Tronto, Joan C. 2013. *Caring democracy :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YU Press(김희강·나상원 옮김, 2014,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일시적이다. 물론 이를 단순히 인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의존관계는 폭력을 반복적으로 수반한다. 폭력이 일상화된 생활 속에서 돌봄은 폭력에 동조하는 형태, 즉 보호적 돌봄, 교환적 돌봄으로 협상된다.

상호의무와 책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과 돌봄, 친밀함(사랑, 연애를 포함)과 구별짓기의 경계는 수시로 변화된다. 따라서 이들의 돌봄 관계는 한 사람에 대한 책임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규범적 강제가 존재하지 않은 관계에서 친밀성과 돌봄은 훨씬 더 개인적, 가족적, 개인적 경계를 넘어서서 발휘될 수 있다. 그렇기에 팸 내부에서 ‘협력’의 관계는 모든 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것을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 욕망, 욕구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¹⁹⁾ 협력은 그렇게 헌신과 희생이 아닌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메우고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예컨대 청소, 빨래, 설거지와 같은 가사노동부터 월세를 내는 일, 의식주를 제공하는 일, 아픈 친구를 돌봐주는 일 등 서로에게 있어 더욱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원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 ‘친구’가 되고, 가족이 돼주는 관계는 ‘친밀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외부와 단절된 ‘팸’은 폭력(과 자본)을 매개로 서로 의지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된다. 결국 ‘팸’이 사회와 단절되고 내부의 역할 관계와 집단 질서에 지배될수록, ‘팸’의 가족적 친밀성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식 속에서 일상을 공유한, 서로에 대한 감각적인 느낌만을 공유하는 매우 불안정한 감정적 의존관계, 심지어 비대칭적인 착취적 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도 상존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우연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들의 관계 사슬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도 ‘호구’가 될 수 있고,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이들에게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것을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 욕망, 욕구에 개입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환경은 이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도, 가족을 거부할 권리도 없다. 생존과 삶의 영역에서, 매우 취약하지만 체현되는 돌봄과 친밀성의 감각은 가치 없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된다. 그러나 ‘계층 사다리’가 사라지고, 가족은 물론이고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조차 없는 이들이 서로의

19) Lindemann, Hilde. 2019. An invitation to feminist ethics(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삶에 개입하고, 돌봄의 필요를 충족시킨 경험까지 삶의 역량 속에서 삭제하는 것은 삶의 또 다른 방향과 경향성까지 부정과 결여로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탈가정 청소년들의 ‘팸’을 둘러싼 돌봄과 친밀성의 경험은 낭만적 사랑 관계로 이해될 수 없으며, 현대 정상 가족 모델이 지향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맺음의 환상을 폭로하고, 나아가 기존의 ‘가족’ 담론과 성인 중심의 돌봄 지원 체계의 공백을 드러낸다.

5. 나가며

코로나 팬더믹은 새로운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내재해 왔던 돌봄 관계를 둘러싼 총체적 위기를 가시화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 정책 역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포용국가’)이 불러올 후견주의와 가족중심주의 사이에 놓여 있다. 청년들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가구소득/세대주 수령으로 귀결된 재난지원금 앞에서 개인보다는 가족의 이름 속에서 호명될 수 있으며, 혹은 그와는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돌파해야 하는 주체로 그려질 수도 있다. 핵심은 청년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의 이면이다. 현재의 청년 담론과 정책적 논의들은 ‘정상 가족’내의 청년의 삶을 표준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표준에서 이탈한 가족 자원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돌봄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조명되는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으며, 그 그림자를 정확하게 비추지 않고서는 청년의 삶을 조명하기 어렵다. 삶에 대한 통제력은 ‘자발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생존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생존력은 여전히 시장중심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금 가족을 둘러싼 청년들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측면은 일-가정 양립정책, 가족친화정책들을 통해서, 청년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인식하는 사회정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틀이 구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과 돌봄에 대한 관행적 사고방식은 강력하다. 이 때문에 제한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그 안의 관계에 기생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리도, 역으로 그 관계를 거부한 청년들을 위한 자리도 없다. 청년들에게 가족은 그림자이자 그늘이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 ‘좋은 돌봄’, ‘건강한 돌봄’은 성인-혈연관계-가족과 안전한 주거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사회적 돌봄, 돌봄의 필요, 돌봄의 윤리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 속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되기 쉽다.

탈가정 청소년의 ‘팸’이외에도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실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 실천은 “가족”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돌봄 체계와 위계 속에서 이러한 실천은 배제되는 경험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돌봄의 위계가 성적 위계와 만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게일 루빈(1984)이 성의 위계질서는 신성한, 안전한, 건강한, 성숙한, 합법적인, 정치적으로 올바른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⁰⁾ 사적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까지 성별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돌봄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에게 이중책임을 전가시키고, 돌봄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가족’을 통해서 ‘이성애의-혼인관계의-출산하는-일대일관계의-집에서-돈이 결부되지 않는’ 인가된, 정상적, 건강한, 좋은 돌봄의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는 기존의 가족, 국가, 혹은 시장을 통한 돌봄만을 그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비공식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뤄지는 돌봄의 관계들을 간과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청년은 이를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불안하고 불안정한 사회,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잘 상품화해야 한다는 압박은 분명 개인에게 모든 선택과 책임의 무게를 지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삶의 터전이자 미래에도 계속 살 곳으로 받아들이면, 현재 노동시장의 현실과 내면화된 개인 책임주의의 사회적 압박을 견디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분명 이는 노동과 삶의 새로운 계기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¹⁾ 그렇기에 지역 정착 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삶의 영역과 전환점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과 제도,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삶의 궤적이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역 청년들은 개인의 책임과 가족의 돌봄 사이에서 실질적인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갈등, 그리고 모순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근대성 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오늘날 가족은 사회적 구성물이며, 그렇기에 자연화된 가족 모델은 신화화된 산물에 불과하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한국사회는 보수화된 혈연가족 모델로 다시 회귀하고 있지만, 이 반동에 맞서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성적 위계화에서 낳아진 돌봄 모델을 벗어나,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상상과 성찰성의 기획이 더 필요하다.

20) 게일루빈(2015), 『일탈』 임옥희, 현실문화. 303쪽

21) 추주희. 2019. “소년혐오인가 사회위기인가?: 위기청소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경제와사회』 124.